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30
------------	----

2025년 6월 1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청 원 자 : 김재영(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91 서초그랑자이
아파트 107동 302호)외 6,133명

나. 소개의원 : 김동욱 의원(국민의 힘, 강남 제5선거구)

다. 접수일자 : 2025년 5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5월 27일

마.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도곡1동은 도보 15~26분 거리의 기존 지하철역과 언덕 등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 다수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초중고·주민이용시설 등 밀집지역으로 광역 철도 정차역이 없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주민들은 수년간 민원제기 등을 통해 교통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교통격차 해소와 생활권 중심의 교통 서비스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임
- 위례과천선은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역 위치는 제3자 제안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도곡공원역이 설치될 경우 위례과천선의 이용 효율성과 강남지역 교통 수요 분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청원함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24년 11월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앞서 도곡1동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도곡공원역 신설로 지역 내 교통격차 해소와 생활권 중심의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줄 것을 청원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제출의견: 원안가결¹⁾

- 위례과천선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가시행 광역철도로서 최근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24.11.)하였고, 현재는 노선 및 정거장 위치가 미확정 상태임

1) 교통정책과-9003호('25.6.9.) : 제33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 및 청원 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노선에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을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철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역 내 교통격차 해소와 생활권 중심의 교통 서비스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및 계획

- 위례과천선(압구정~정부과천청사·법조타운, 총 연장 28.25km)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로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음
-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 제안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난 11월 7일 통과²⁾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³⁾한 바 있고, 향후 제3차 제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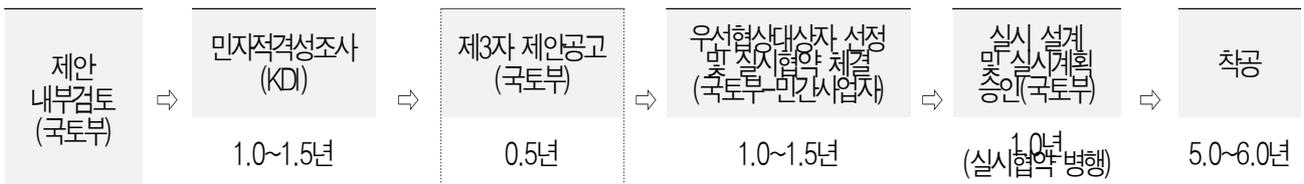
2)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4.11.7.)

고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음

※참고1: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 노 선 명: 위례과천선(광역철도)
- 구 간: 정부과천청사 법조타운 ~ 압구정
- 사업내용: 연장 28.25km - 사 업 비: 3조 1,876억원
- 사업목적: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제고
- 추진경위
 - '16.06.27.: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19.1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서울시→국토부)
 - '20.05.: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위례과천선 포함(국토부)
 - '21.07.: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21. 12: 위례과천선 민자제안(대우건설 →국토부)
 - '22.09.: 민자적격성조사 착수(KDI)
 - '24.11.: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통보(기재부 → 국토부)
 - '25.0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국토부)

※참고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 위례과천선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및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까지(연장 28.25km, 정거장 약 15~17개, 차량기지 1개소) 이어지는 'Y'자 형태 노선으로 서쪽으로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까지 이어질 예정⁴⁾임

3)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국토교통부, '25.2.)

- 동 청원은 위례과천선 노선(안)의 강남지선 중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도곡1동은 언덕과 경사가 많은 지형으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기준으로 주요 역사인 매봉역(1.2km, 20분), 양재역(1.4km, 22분), 도곡역(1.7km, 31분), 강남역(1.6km, 23분), 역삼역(약 1km, 15분) 등 최소 15분~최대 31분까지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철도 접근성이 낮고, 도곡1동 주변 500m 인근에는 지하철역이 없는 철도 사각지대임을 고려할 때 위례과천선 내 도곡공원역(안) 역사 신설은 이용 효율성과 강남지역 교통수요 분산 측면에서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위례과천선은 최근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었고 향후 제3차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위례과천선과 관련하여 위례신도시,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역사 신설 및 노선 연결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⁵⁾되었

4) “과천-압구정 잇는다” 청신호 켜진 위례과천선, 수혜지 살펴보니(이투데이, '24.11.11.)

5) 위례과천선 관련하여 역사신설 및 노선연결과 관련된 민원 및 서울시의회 청원

- 서초구: 서초보금자리지구, 우면2지구 주변 “선암IC역” 신설 요청 - 과천시: 과천 주암지구 주변 “주암역” 신설 요청

-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 주민들, 철도노선 미착공에 헌법소원 제기('25.5.26.)

<서울시의회 청원>

-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22.10.13.)

-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23.2.1.)

-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요청에 관한 청원('24.10.14.)

- 위례과천선 (가칭) 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25.3.26.)

고, 관련 법령⁶⁾에서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km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든 역 신설 시 이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수요 증가 및 철도 사각지대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4.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붙임1 참조

[붙임1]

채택의견서

- 청원명 :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교통정책과)

- 채택 의견
 - 동 청원은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노선(압구정~정부과천청사·법조타운, 총 연장 28.25km)에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을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철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내 교통격차 해소와 생활권 중심의 교통서비스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위례과천선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광역철도 노선이며 지난 11월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향후 제3자 제안공고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음

 - 동 청원은 위례과천선 노선(안)의 강남지선 중 도곡1동 주민센

터 사거리에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도곡1동은 언덕과 경사가 많은 지형으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기준으로 주요 역사인 매봉역(1.2km, 20분), 양재역(1.4km, 22분), 도곡역(1.7km, 31분), 강남역(1.6km, 23분), 역삼역(약1km, 15분) 등 최소 15분~최대 31분까지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철도 접근성이 낮고, 도곡1동 주변 500m 인근에는 지하철역이 없는 철도 사각지대임을 고려할 때 위례과천선 내 도곡공원역(안) 역사 신설은 이용 효율성과 강남지역 교통수요 분산 측면에서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향후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위례신도시,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역사 신설 및 노선 연결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고, 관련 법령에서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km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든 역 신설시 이를 위배할 우려가 있고, 장래의 수요 증가 및 철도 사각지대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임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30		접수연월일	2025. 5. 26.
청원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성명	김재영 외 6,133명		
소개의원	김동욱	소속위원회	도시안전건설	
건명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교통			
<p>○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곡1동은 도보 15~26분 거리의 기존 지하철역과 언덕 등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 다수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초중고·주민이용시설 등 밀집지역으로 광역철도 정차역이 없어 교통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 주민들은 수년간 민원제기 등을 통해 교통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교통격차 해소와 생활권 중심의 교통 서비스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임- 위례과천선은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역 위치는 제3자 제안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도곡공원역이 설치될 경우 위례과천선의 이용 효율성과 강남지역 교통수요 분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청원함				